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75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 한정애·박홍배·조인철

이강일 • 문진석 • 송옥주

권향엽 • 이수진 • 김영배

박수혂 • 민홍철 • 조정식

서영교 · 허성무 · 이학영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「민법」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, 2020년 현행법 및 「노인복지법」・「장애인복지법」 등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.

그런데 500만원 초과 잔여재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,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「민법」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

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,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자하는 것임(안 제45조의2 등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7266호), 「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274호),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273호)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26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제1항 단서 중 "500만원"을 "1천만원"으로 한다.

법률 제17782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45조의2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「민법」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의2(상속인 없는 재산의	제45조의2(상속인 없는 재산의
처리) ① 시설을 설치·운영하	처리) ①
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	
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	
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	
는 「민법」 제1053조부터 제1	
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	
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. 다	
만,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	<u>1</u>
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	<u>천만원</u>
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잔여	
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	
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	
갈음할 수 있다.	<u>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782호 사회복지사업법	법률 제17782호 사회복지사업법
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
제3조(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	<u>&lt;삭 제&gt;</u>
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의2의	
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	
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	
설에 이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	
경우부터 적용한다.	